

2018년도 하반기 보훈대상자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분야 및 인원

신입사원(G3등급)

모집 분야	발전설비운영(일반)		계
	기계(G3) [다운로드]	전기(G3) [다운로드]	
인원	15	10	25

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별첨2] 참조

2. 채용조건

신입사원(G3등급) : '18.12.26일부 정규직 4직급 입사(수습 3개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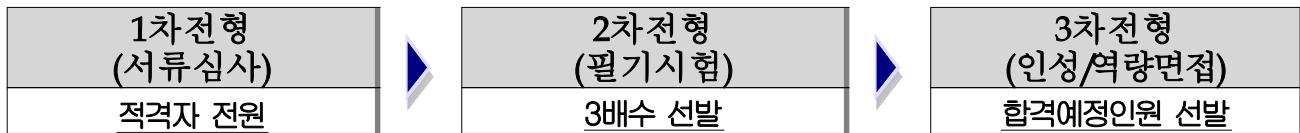
3. 지원자격

신입사원(G3등급)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연령	○ 제한 없음
병 역	○ 입사일('18.12.26예정)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 타	○ 우리회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8.기타사항 참조) ○ 해외근무 가능자
발전설비운영(일반)	○ 자격 -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면허 소지자(별첨1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4. 채용전형별 절차 및 기준

전형단계 및 전형별 합격배수



전형 내용

전 형	평 가 내 용
1차 전형	○ 자격증, 직무능력기반지원서(적부판정)
2차 전형	○ 필기시험(응시분야별 적성 및 전공)
3차 전형	○ 개별면접,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신원조사(적부판정)

2차(필기시험)전형 전공과목

분야	전공	
신입사원 (G3등급)	기계	기계일반(기계제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기계정비일반)
	전기	전기일반(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공학, 전자자기학)

5. 우대사항

- 고급자격증 우대사항 : 관련분야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 사회형평적 인재 우대사항

구분	대상	우대사항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각 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5%~10%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발전소현장 정비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청각, 간질장애 제외)	○ 각 단계별 가점부여 - 만점의 10%
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본인명의 증명서 제출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명의 입증서 가능(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2차(필기시험)전형 가점부여 : - 만점의 3%
이전지역 인재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자(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별첨 3 참조)	○ 2차(필기시험)전형 가점부여 - 만점의 5%

- 주1) 저소득계층 가점과 이전지역인재 가점은 동시에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2)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인당, 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3) 이전지역인재 가점과 관련하여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하여야 하며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해임 될 수 있음을 유의

[본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와 병행시행)]

- 목표비율 : 25%
- 적용대상 :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제외)으로 광주·전남 소재 학교 졸업(예정)한자
- 적용단계 : 각 전형별 합격인원 결정시
- 적용분야 : 전직종
- 적용방법 : 각 전형별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5%에 미달 할 경우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선 미달자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기타 : 이전지역 인재 정의 및 해당여부 별첨 3 참조

6. 채용절차 및 일정(채용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일부변경 가능)

채용절차		일정	대상자	비고
채용공고		'18.09.21(금)~10.5(금)	응시자 전원	홈페이지 참조 www.kps.co.kr
입사지원서 접수		'18.10.01(월) 14:00 ~ 10.05(금) 17:00	응시자 전원	* 마감시간 : 17:00
1차 전형	서류심사	'18.10.8(월)~10.17(수)	응시자 전원	○ 합격자발표 '18.10.19 17:00 예정
2차 전형	필기시험	'18.10.27(토)	1차 전형 합격자	○ 장소 추후 공고 ○ 합격자발표 '18.11.2 예정
3차 전형	역량면접 인성검사 등	'18.11.20(화)~11.22(목)	2차전형 합격자	○ 장소 및 시간 추후공고
최종합격자발표		'18.12.21(금) 17:00	-	○ 입사일 : '18.12.26예정

주) 원서접수 마감시간(17:00)까지 접수완료한 지원자만 지원 자격 부여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 안내

- 목적 : 필기시험 및 역량면접 등 본인 확인용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 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증명사진
- 입력방법 : 채용홈페이지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화면에서 입력
- 입력기간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시점 ~ 추후 공고
- 상기 기한까지 입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대상자 확정 예정이며 미입력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7.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상 사진등록란, 학교명, 전공, 주소, 생년월일 기재란 없음
- E-mail기재시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 지원서(자기소개서포함)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관련내용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지역인재, 생년월일 등은 면접 전형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8. 기타사항

- ▶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지원서 허위작성(제출서류와 대조 및 관계기관 사실여부 조회), 증빙서류 위변조 및 인사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하고, 당사 입사시험 지원제한과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개선방안 반영>

- 부정합격자 제재 기준 및 절차
 - (본인 기소시) 채용비리 직접가담자에 해당, 즉시 퇴출 추진
 - (관련자 기소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 합격자는 일정절차를 거쳐 퇴출
 - 관련자 기소시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 ① 관련자 기소시 직위해제 등 업무배제 → ② 내·외부 감사기관 재조사 → ③ 징계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출

-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국적자는 면접전형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 ▶ 지원자는 최종학교 졸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교 졸업(졸업예정, 재학)증명서
- ▶ 필기시험, 면접시험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기간만료전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 ▶ 입사지원서 작성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는 전형단계별 합격자 통보시 활용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 지원자격을 갖춘 재학생의 응시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입사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 졸업 후 입사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업을 이유로 입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음 각 호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사규정 제9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채용기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회사 안내는 한전KPS(주) 홈페이지(www.kps.c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모집분야별 지원가능 자격증(최종 개정된 명칭)

모집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
기 계	<p>[기술사] 기계, 방사선관리,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금속재료, 항공기관, 철도차량, 소방</p> <p>[기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ISO18436-2진동분석영역Ⅲ,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항공, 기관사1~3급(면허), 철도차량, 소방설비(기계), 산업안전, 품질경영, 원자력</p> <p>[기능장] 기계기공, 건설기계정비, 판금제판, 배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철도차량정비</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기공, 기계기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ISO18436-2진동분석영역Ⅱ, 정밀측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판, 공조냉동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금속재료, 항공, 기관사4,5급(면허), 철도차량, 소방설비(기계), 산업안전, 품질경영</p>
전 기	<p>[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자응용, 산업계측제어</p> <p>[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메카트로닉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설비(전기), 산업안전, 품질경영,</p> <p>[기능장] 전기, 전자기기</p> <p>[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방설비(전기)</p>

정비환경 및 직종별 직무 수행내용

정비환경

고객사와의 정비계약에 따라 작업오더를 바탕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비업무는 전국에 산재한 화력·원자력·수력발전소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온, 습기, 소음과 분진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발전소 정지시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돌발적인 비상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직무 수행내용

- 기계/전기
 - 발전소내 터빈, 발전기 등 주요설비의 일일 경상정비 및 예방정비, 긴급 보수 등을 수행
 - 가동중인 설비를 정기적으로 정지하여 계획예방공사 등을 시행, 기계 및 전기설비를 분해 점검 조립 및 성능을 유지하는 업무
 - 중량물 취급, 방사선 노출(원자력), 고소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작업장 준비 및 공기구 준비 등 정비준비 작업 필요
 - 발전기, 고압전동기 작업시 중량물 및 고소작업이 수반됨
- 용접
 - 보일러튜브의 교체 및 돌발복구, 배관의 보수 및 신설, 필요한 기구나 장치 등의 제작·고정
 - 원자력의 경우 화재방호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준수가 필수적임
- 중기
 - 원전내 이동형발전차, 천장크레인, 지게차 운전 등 주요 업무이며, 작업 구역설정 등 정비준비 및 안전확보 필요
- 화학
 - 증기발생기 화학세정, 화학제염 등의 경상업무와 계통제염, 단위부품 화학 및 전기화학 제염, 폐기물 처리 등 원전해체 프로젝트 업무 담당
 - 화학약품을 활용한 실험 및 이를 통한 화학공정 설계 및 개발역무, 실험을 위한 인공시편 제조 및 실험실 운영, 화학공정 프로세스 장치 설계 등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발전설비운영(기계)

NCS 분류 체계	대분류	19. 전기전자		
	중분류	01. 전기		
	소분류	02. 발전설비운영		
	세분류	02. 화력발전설비운영	05. 원자력발전기계설비정비	
	능력단위	화력발전설비 정비	펌프정비 밸브정비 터빈정비 원자로정비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화력 발전 설비 운영	직무수행 내용	정비계획수립,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돌발고장복구와 정비예비품을 확보함으로서 설비신뢰도 향상과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업무		
	필요지식	보일러, 터빈, 펌프, 밸브 등 주요발전설비의 원리, 구조, 기능, 특성 기계설비 및 비파괴 관련 이론 품질,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규정		
	필요기술	보일러, 터빈, 펌프, 밸브 등 정밀 점검 및 진단 평가 기술 돌발 고장 발생 시 대처 능력 기기 이력 작성과 정비 이력 관리 설비별, 기기별 정비절차서 작성 능력 공사 진행 단계별 공정 평가와 종합 관리 능력		
	직무수행 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치밀성 타 관련부서와의 협조적 자세 선진 신기술 벤치마킹 및 설비개선 노력 발전설비 엔지니어로써의 책임감, 안전수칙 준수		
원자력 발전기계 설비정비	직무수행 내용	원자력발전소 기계설비의 성능·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하고, 예측·예방 정비 및 고장 수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필요지식	펌프, 밸브, 터빈, 원자로의 형식에 따른 구조, 기능 및 특성 원자력발전계통의 구성 정비절차서에 관한 지식 독도법(설치도면, 제작도면, 계통도 등) 방사선 방호관련 지식		
	필요기술	비파괴검사기술(육안검사, 액체침투탐상검사, 초음파검사 등) 기기이력 작성과 정비이력 관리 정비 장비 활용기술 정비절차서에 따른 성능 판정 능력 인적 실수유발방지 기술		
	직무수행 태도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안전수칙 준수 인적오류를 예방하려는 노력, 타 부서와 협력하려는 노력 선진기술 벤치마킹 및 설비개선 노력		
참고 사이트	www.ncs.go.kr			

□ 발전설비운영(전기·계측제어)

NCS 분류 체계	대분류	19. 전기전자		
	중분류	01. 전기		
	소분류	02. 발전설비운영		
	세분류	02. 화력발전설비운영	04. 원자력발전전기설비정비	
	능력단위	화력발전설비정비	발전기정비 전동기정비 차단기정비	
직업기초 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			
화력발전 설비운영	직무수행 내용	정비계획수립,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돌발고장복구와 정비예비품을 확보함으로서 완벽한 설비신뢰도와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는 업무		
	필요지식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의 원리, 구조, 기능, 특성 경상정비업무 수행 절차 ERP시스템 구성 품질, 안전관리와 환경관리 규정		
	필요기술	전기와 계측제어설비의 기기별 점검 기술 기기 이력 작성과 정비 이력 분석 설비별, 기기별 정비절차서 작성 능력 공사 진행 단계별 공정 평가와 종합 관리 능력 돌발 고장 발생 시 대처 능력		
	직무수행 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치밀성 타 관련부서와의 협조적 자세 선진 신기술 벤치마킹 및 설비개선 노력 정비업체 전문인력으로서 책임감 안전수칙 준수		
원자력 발전전기 설비정비	직무수행 내용	원자력발전소 전기설비의 성능·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점검하고, 예측·예방 정비 및 고장 수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업무		
	필요지식	발전기·전동기·차단기의 형식에 따른 구조, 기능 및 특성 원자력발전계통의 구성 정비절차서에 관한 지식 전동기·발전기·차단기의 작동 원리 정비절차서에 따른 해당설비 조립 절차		
	필요기술	정비 장비 사용 기술 정비절차서에 따른 성능 판정 능력 인적 실수유발방지 기술 작업계획서 및 작업공정표 작성 능력		
	직무수행 태도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 정비절차서, 규정, 안전수칙 준수 인적오류를 예방하려는 노력 타 부서와 협력하려는 노력 안전수칙 준수		
참고 사이트	www.ncs.go.kr			

이전지역 인재 관련 참고 자료

1.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2. 이전지역 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 지역 학교에 포함
- ②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③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④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3.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가) 『고등교육법』 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가)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다)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가)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④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시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졸업 후 다른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중퇴 후 다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